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-84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7월 26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3. 7. 26. ~ 2023. 8. 8.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㈜리케아 알앤디	110111-4152429	0178200274100002978	₩14,337,000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
2	김대한	1985.○.20.	0178200274100008998	₩31,860,000	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
3	오인숙	1956.○.01.	0178200274100008989	₩22,302,000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
4	김한길	1986.○.28.	0178200274100008988	₩22,302,000	청남도 당진시 함덕읍 미락 2 안길
5	신은우	1954.○.09.	0178200274100005932	₩22,302,000	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
6	장훈	1980.○.29.	0178200274100005931	₩17,700,000	서귀포시 장수로
7	조민호	1977.○.21.	0178200274100009004	₩22,302,000	전라북도 군산시 옥봉초교길
8	조성숙	1965.○.26.	0178200274100003187	₩29,412,000	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
9	정용운	1978.○.20.	0178230274100002342	₩10,800,000	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
10	남이균	1969.○.14.	0178200274100002964	₩1,050,000	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
11	㈜콜롬버스 대리운전	200111-0370828	0178230274100000197	₩4,473,000	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
12	이성호	1977.○.01.	0178230274100000196	₩2,677,500	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
13	고관민	1985.○.16.	0178220274100001142	₩3,832,500	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
14	한해영	1968.○.17.	0178230274100000195	₩787,500	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5	김장현	1974.○.29.	0178230274100000194	₩18,270,000	경상남도 진주시 돛골로
16	우상구	1967.○.16.	0178230274100000193	₩3,433,500	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
17	전미진	1977.○.13.	0178230274100000192	₩5,040,000	광주광역시 광산구 아산길
18	이덕순	1975.○.01.	0178220274100001749	₩4,410,000	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광주관할팀 (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☎ 062-457-1596, 1594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